봉선 · 주월 광명메이루즈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 7320호(2012. 02. 2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청약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 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09. 9. 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기존의 주택 공급면적의 표기방식(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택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구 분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전용면적 85㎡이하	전매제한 없음	당첨일로부터 3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과거 분양가 상한제 재당첨기간내에 있는 자가 2009. 4. 1 – 2012. 3. 31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 2. 27)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03. 02) 현재 주택의 공급지역을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인접한 전라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또한, 동 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 2(최저층)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2(최저층)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주택형별 관람 안내
  - 실제 견본주택에서는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84.7936㎡(A), 84.6448(B) 타입이 설치되어 있음.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102번지 외 95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3~28층 4개동 3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시설 – 주차장,관리사무소,전기실,기계실,경비실(2) 등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주민공동시설,경로당,작은도서관]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가. 공급내역 : 총 343세대(일반 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무주택 특별공급 총 82세대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무주택세대주 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33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6항에 의한 무주택세대주 다자녀 특별공급 16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7항에 의한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무주택 특별공급 33세대

(면적단위 : ㎡)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계	그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최고층수	동 구분
민영주택	2012000142-01	84.7936	167	84.7936	28.3601	113.1537	49.4046	162.5583	42.8790	28	101-104
	2012000142-02	84.6448	176	84.6448	29.5147	114.1595	49.3178	163.4773	42.8050	28	101-104

나. 공급금액 (금액단위:천원)

주택형 (전용면적) (㎡)	층수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차 (12.05.15)	2차 (12.09.15)	3차 (13.01.15)	4차 (13.05.15)	5차 (13.09.15)	6차 (14.01.15)	잔금 (입주시)
84.7936	2층	8	61,986	166,014	228,0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68,400
	3층	8		176,014	238,0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71,400
	기준층	143		186,014	248,000	24,800	24,800	24,800	24,800	24,800	24,800	24,800	74,400
	최상층	8		206,014	268,000	26,800	26,800	26,800	26,800	26,800	26,800	26,800	80,400
84.6448	2층	8	61,880	166,120	228,0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68,400
	3층	8		176,120	238,0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71,400
	기준층	152		186,120	248,000	24,800	24,800	24,800	24,800	24,800	24,800	24,800	74,400
	최상층	8		206,120	268,000	26,800	26,800	26,800	26,800	26,800	26,800	26,800	80,4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 및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그밖의 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등의 면적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측수는 건물 정체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측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등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이하 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을 않기로 한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2항, 6항, 7항에 해당하는 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1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5%),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10%) 범위 내에서 공급되며, 당첨 견본주택에서 직접 접수 및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선정함.
  - 신청 일시 및 장소 : 2012. 03. 07 (수) 10:00~14:00 , 당사 견본주택
  - 추첨 일시 및 장소 : 2012. 03. 07 (수) 15:00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7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당첨자 동.호수 발표 및 장소 : 2012. 03. 15 (목)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수정접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응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2012. 03. 20(화)~2012. 03. 22(목) , 3일간, 당사 견본주택]
  - ▶ 특별공급 세대수

주 택 형	일반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84.7936㎡	8	8	16
84.6448㎡	17	8	17
합 계	33	16	33

  - ▶ 입주자저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함.
    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경우
    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해당 기준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
  - 거주지역 제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청약 가능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제1,2순위로 청약이 불가함.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처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 특별공급 당첨자가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 특별공급 당첨자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고, 국토해양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오며, 접수마감시간(14:00)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과거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중 금융결제원, 국토해양부 등의 주택소유 전산검색을 통하여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주택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계약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일반 특별공급 (총 건설량의 10%, 33세대)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2.28)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단태 기간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중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용 주택청약종합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대상 기준 및 청약 경쟁률이 1:1 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 대상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1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및 배점기준표(당사 견본주택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의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자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동도 : 주택공급신청용)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상기 제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02. 0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봄.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봄.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총 건설량의 10%, 33세대)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2.28)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신중이거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낙태관련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 청약자격을 인정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가구원 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의 세대원으로 하되,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 종교기관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한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의 경우 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2010년부터는 '6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하여는 통계자료를 작성,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6인 이상 가구' 도 5인 이상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구 분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이하	4인	5인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4,007,671원 이하	4,447,007원 이하	4,709,76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4,809,205원 이하	5,336,408원 이하	5,651,718원 이하

▶ 대상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정) : 본인 발급기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발급기준), 출생일자 확인 필요한 기본증명서(자녀 발급기준)
  -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입양의 경우)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용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증명서(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선정함.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함.

◎ 특별공급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서류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접수장소에 비치)

◎ 일반공급

◎ 공통사항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03. 02)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주택분양을 신청